

#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3
----------	------

제출년월일 : 2010. 2. /0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10.1.1.)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 개정 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1. 6. ~ 2010. 1. 16. (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 (경기도 세정과-241, ‘10. 1. 6.)

#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천원
-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 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에 제1절의 2(제20조의 2부터 제20조의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제20조의 2(세율) ① 법 제176조의 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 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0조의 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19조의 2를 준용한다.

제20조의 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1475호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  
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안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이종민
	담당자 성명·전화	신운호 (행정 2198)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세목) ① (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p>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p>	<p>제4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p> <p>③----- .</p> <p>1.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제2장 보통세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절 주민세								
<p>제19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p> <p>2. 법인</p>	<p>제19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천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따른 종업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따른 종업원)	500,0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	50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따른 종업원)	50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	500,000원								

현 행	개 정 안
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무소 등</u> 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업소</u> 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무소 등</u> 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무소 등</u> 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업소</u> 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업소</u> 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무소 등</u> 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무소 등</u> 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업소</u> 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u>사업소</u> 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	그 밖의 법인
	50,000원
	50,000원
<b>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b>	
1. 소득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2. 법인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농업소득세 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b>&lt;신 설&gt;</b>	
제19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p>「경기도 도세 조례」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u></li> <li><u>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u></li> <li><u>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li> <li><u>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li> <li><u>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li> <li><u>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li> <li><u>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li> </ul>
<p><b>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로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b></p>	<p><b>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b>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u></li> <li><u>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li> <li><u>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li> <li><u>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u></li> </ul>

현 행	개 정 안
<p>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 조에 따른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 까지 법 제177조의4 제1항에 따라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할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일</p> <p>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 간의 만료일</p> <p>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 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p>	<p>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p>
<p>③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때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 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 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 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 고불성실가산세</p> <p>2. 제1항에 따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 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 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p>	

현 행	개 정 안						
<u>한 납부불성실가산세</u> <p>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p>							
<u>&lt;신 설&gt;</u>  <u>&lt;신 설&gt;</u>	<p><u>제1절의2 지방소득세</u></p> <p><u>제20조의2(세율) ①</u>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70%;">세율</th> </tr> <tr> <td>소득세분</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법인세분</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 </tr> </table> <p><u>②</u>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u>&lt;신 설&gt;</u>	<p><u>제20조의3(신고의무) ①</u>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u>②</u>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19조의2를 준용한다.</p>						
<u>&lt;신 설&gt;</u>	<p><u>제20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u>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p>						

현 행	개 정 안
	<p>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u>제5절 농업소득세</u>	<p>1. <u>&lt;삭 제&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u>제3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u>	
<p>법 제201조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u>제37조(기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u>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법 제202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u>제38조(비과세 및 감면결정 통지) 시</u>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p>장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른 통지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3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b>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b>&lt;삭 제&gt;</b>
<p><b>제40조(수시부과)</b>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p>	<b>&lt;삭 제&gt;</b>
<p><b>제4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b></p> <p>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p>	<b>&lt;삭 제&gt;</b>

현 행	개 정 안
<p>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해당 시 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2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u>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p> <p>1. 일당 : 30,000원 2. 여비 : 5급 공무원 기준</p>	<u>&lt;삭 제&gt;</u>
<p>제3장 목적세</p> <p><u>제2절 사업소세</u></p>	<p>제3장 목적세</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제64조(세율)</u>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2. 종업원 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p> <p>② 영 제211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u>제65조(징수방법과 납기)</u>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종업원 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p>	<u>&lt;삭 제&gt;</u>

현 행	개 정 안
<p>영 제213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영 제213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p> <p>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p>제66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p> <p><u>제6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u> 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합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p>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학술, 교육, 기예 또는 공익</p>	
	<u>&lt;삭 제&gt;</u>

현 행	개 정 안
<u>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p>조례 제1475호  <b>「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b>  <b>&lt;부 칙&gt;</b>  <b>제1조(시행일) (생략)</b>  <b>제2조 (적용기한) 제61조의 개정규정은</b>  <u>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u>  <b>에 한하여 적용한다.</b></p>	<p>조례 제1475호  <b>「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b>  <b>&lt;부 칙&gt;</b>  <b>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b>  <b>제2조(적용기한) -----</b>  <u>-- 2009년도 및 2010년도-----</u>  -----.</p>